

# 식품접객업소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

클럽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사건 발생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('24.8.7. 시행) 됨에 따라 안내 드리니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사항

### □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※ 법안 공포('24.2.6.), 법안 시행('24.8.7.)

- (개정사유)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

(신설) 제44조의2(위반사항의 통보)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(장소 제공 등)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,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

### □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※ 법안 공포('24.2.6.), 법안 시행('24.8.7.)

- (개정사유) 유흥주점 등의 영업자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·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

제75조(허가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~ (생략) ~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
(신설) 20. 영업소에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1호(마약류 투약·보관장소 제공 등)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·방조한 경우

## 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자 유의사항

- **영업자가 고의로**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등을 제공하였거나 **교사·방조**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
- **유관기관 입동단속 확대** 예정으로 손님, 종사자 등의 일탈행위 발생시 영업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**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, 종사자 교육 등 자율적 관리노력 강화** 요망

## ‘고의’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

최근 국회 본회의('24.1.9.)를 통과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 위생법」, 「공중위생관리법」과 관련하여,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·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.

개정법률에 따르면, ①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, ②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.

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·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,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(검찰 수사 종료) 이루어지므로,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

※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, 유흥업소 운영자 2명, 노래방 운영자 4명, 파티룸 운영자 1명, 총 11명에 대해서 혐의 적용

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,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.

### <붙임> 주요 질의응답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식품의약품안전처<br>마약정책과      | 책임자 | 과 장 | 김영주 (043-719-2805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미영 (043-719-2801) |
| 담당 부서 | 식품의약품안전처<br>식품안전정책과    | 책임자 | 과 장 | 최대원 (043-719-20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진국 (043-719-2011) |
| 담당 부서 | 경찰청<br>마약조직범죄수사과       | 책임자 | 과 장 | 백승언 (02-3150-014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계 장 | 이주만 (02-3150-2171) |
| 담당 부서 | 보건복지부<br>건강정책과(생활보건TF) | 책임자 | 팀 장 | 김정희 (044-202-2855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은희 (044-202-2856) |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 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표여갈 안심기준

대한민국  
지책브리핑



**질문 1**

단란주점·유흥주점·일반음식점·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?

**① 답변**

-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,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,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.
- 향후에는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,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.

**질문 2**

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?

**① 답변**

-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, 시설, 장비, 자금,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·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**질문 3**

손님이 룸,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?

**① 답변**

- 개정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‘제3조제11호 (장소 등 제공 금지)를 위반한 경우’로 정하고 있어, 손님에게 마약 투약

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, 제공토록 하거나(교사), 제공을 도운 사실(방조)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.

#### 질문 4

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?

#### 답변

-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,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·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질문 5

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?

#### 답변

-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,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「행정절차법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